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17호
2020. 3. 13.(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28호)1

공 고(8)

- 도시계획시설사업(한남대학교 시설 MAKER SPACE 공사)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20-224호)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34호)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35호)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36호)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244호)6
- 장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공고 제2020-250호)7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251호)9
-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신탄진휴게소)(공고 제2020-252호)11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41호)12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신대동 174-2	회덕로 22	2020. 3. 13.	건물신축	행정구역명(회덕동)을 반영	
비래동 116-20	우암동로17번길 35	2020. 3. 13.	건물신축	우암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한남대학교 시설 MAKER SPACE 공사) 공사완료 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외 31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한남대학교 시설 MAKER SPACE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042-608-515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외 31필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MAKER SPACE 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416,275.0m²
 - 연 면 적 : 기존 182,439,261m², 증축 682.09m², 계 183,121,351m²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이사장 이성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오정동)
- 마. 사업시행기간 : 2019. 8. 2. ~ 2020. 03. 09.
-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도시가스관 철거	상서동 831-21번지	-	콘크리트	2.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00 (착공일로부터20일)	-
2	대덕구 대덕대로 1617번길	도시가스관 철거	석봉동 749번지	-	아스콘	2.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00 (착공일로부터20일)	-
3	대덕구 대전로 1131번길	도시가스관 철거	오정동 714번지	-	아스콘	2.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00 (착공일로부터20일)	-
4	대덕구 오정로 75번길	도시가스관 철거	오정동 719번지	-	아스콘	2.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00 (착공일로부터20일)	-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다덕구 비래동로 15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비래동 121-29번지	63.00	아스콘	2.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40 (착공일로 부터20일)	0.13
2	대덕구 계족로 505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248-12번지	63.00	아스콘	7.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8.40 (착공일로 부터20일)	0.44
3	대덕구 중리로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384-10번지	63.00	아스콘	2.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40 (착공일로 부터20일)	0.13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다덕구 회덕로	도시가스관 매설	신대동 177-8번지	63.00	아스콘	4.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4.80 (착공일로부터 20일)	0.25

끝.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및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아 래

1.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0. 03. 13. ~ 2020. 03. 27.(14일간)
3. 송달대상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발생년도	부과예정 금액(원)	비고
황미*	중리동 239-33	무단증축	경량철골조	3.6	주택	2009	227,000	폐문부재
우송고 총동창회관	오정동 489-22	무단증축	컨테이너	18	창고	2018	813,000	폐문부재

4. 송달내용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해 자진정비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43)로 연락 바랍니다.
- 아울러,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장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 장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37-1번지 일원(214필지, 189,707㎡)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2020년 3월 13일~2020년 4월 12일)
4.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5. 사업기간 : 2020년 3월~2021년 12월
6. 사업예산 : 60,884천원
7. 관계 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 서류 : 지번별 조서 및 사업위치도
 - 나.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과
8. 의견 제출 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지적과(☎042-608-5313, 5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방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과
- 나. 전화 : 042-608-5313, 5315
- 다. 팩스 : 042-608-3829
- 라. 우편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03. 13. ~ 2020. 03. 27.(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1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11번길 45, 4**호(중리동, 행복주택)	28노37**	2020. 02.20	2020. 02.27	폐문 부재
2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0*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11러33**	2020. 02.20	2020. 02.21	수취인 불명
3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33**	2020. 02.24	2020. 03.02	폐문 부재
4	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0*동 1**호(법동, 보람아파트)	87두16**	2020. 02.28	2020. 03.06	폐문 부재
5	김**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54번길 10, *동 3**호(중촌동, 주공아파트)	88로89**	2020. 02.28	2020. 03.06	폐문 부재
6	이**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중로47번길 3*(가수원동)	26저18**	2020. 02.28	2020. 03.06	폐문 부재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신탄진휴게소)공사 완료 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36-1 외 72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신탄진휴게소)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042-608-515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36-1 외 72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신탄진휴게소)
- 명 칭 : 신탄진휴게소 주1동 증개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81,765m²
- 연 면 적 : 4,765.55m² (기존 4,364.96m² 금회 증 400.59m²)
- 주1동(본동) 캐노피 증축(400.59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울곡동, 한국도로공사)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 제130호, 2020. 5. 1. 시행) 개정 및 자치단체 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라 행정규칙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정함(안 제2조).
- 나. 징수관·재무관이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예산집행품의 전결범위와 재정합의 한도를 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일상경비의 기준액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사고시 출납원의 인계사무 및 계산서 작성의 대리를 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자로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20. 03. 13. ~ 2020. 04. 02.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등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04. 0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회계정보과(전화 : 042-608-6541, FAX : 042- 608-3826, e-mail : baks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회계정보과 담당자 박상윤(전화 : 042-608-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의 입찰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을 포함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덕구의회는 대덕구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덕구의회는 대덕구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

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단·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대덕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 도서관장(신탄진, 안산, 송촌)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의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위임범위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정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미만)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미만)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미만)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②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출 절차의 예외)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를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제작 중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것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또는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동 제외)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 계 책 임 관	자치행정국장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단·과장		보건 행정과장, 도서관장(신탄진 , 안산, 송촌)		
재 무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정보과장, 각 실·단·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보건 행정과장, 도서관장(신탄진 , 안산, 송촌)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단·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구청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단·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홍보실장				
통 합 지 출 관	회계정보과장				
지 출 원	경리팀장	의정팀장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주사보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무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실·단·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세입업무 팀장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주사보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단·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각 실·단·과 서무업무팀장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 담 당 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복합문화센터• 동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49조(지출의 절차)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